

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부 천 시 장

나. 회부일자 : '94. 11. 18.

다. 상정일자 : '94. 12. 13.

라. 의결일자 : '94. 12. 13.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환경보호과장

나. 내 용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재활용 수집요원 확보계획은 되어 있는 지?	○ 기존에 구청별로 7명 이상이 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95년 예산에 충원계획을 세웠음.
○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에 대한 대책은?	○ 현재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는 기계를 95년 예산에 책정하여 놓았으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더 확보될 것이라 판단됨.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○ 없 음

나. 찬성토론

○ 본 제정조례는 93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서 제정 공포하려 하였던 사안으로 전 의원 찬성

5. 수정안내용 :

○ 없 음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☐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327
의 결	94. 12. 21
년 월 일	(제33회)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2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,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회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강구토록 지도 (안 제4조)
-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기 보관하여 재활용 될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, 보관방법 등을 강구토록 지도 (안 제5조)

○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음. (안 제6조)

－ 별첨 “조례안” 참조

○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시민, 단체, 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. (안 제7조)

○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자료제출, 조사,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함. (안 제8조)

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동법률 시행령 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.) 및 동법률 시행규칙 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.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시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(이하 “자원재활용”이라 한다.)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형 자원재활용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.

1.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

2.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

3.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
4.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

제 3 조 (자원재활용 기본계획수립) 시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 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1회용품 등 사용자재를 위한 지도) ① 시장은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홍보·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

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 추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.

제 5 조 (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) 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, 보관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5조위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·운반·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·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
2.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·사료를 제조하는 퇴비·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의 설치사업
3.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·보관장소 설치사업
4.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제 7 조 (재활용 추진협의회)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단체, 관련 학지,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 (이하 “시 협의회”라 한다.)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시 협의회 구성위원 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.)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(보고 및 검사 등)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,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
2.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,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 9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오수·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 안 자 : 부 천 시 장

나. 회부일자 : '94. 11. 18.

다. 상정일자 : '94. 12. 13.

라. 의결일자 : '94. 12. 13.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환경보호과장

나. 내 용 :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법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된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보다 더 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가축 제한지역에 있어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을 법정동으로 나눈 사유는?	○ 가축제한지역을 행정동으로 나누면 분동될 경우 개정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할 것 같이 법정동으로 나누어 구분 하였음.